

광주지방법원 2017. 10. 18 선고 2017가단508517(본소), 2017가단513571(반소) 판결
[구상금 ·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

피고(반소원고)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

변론 종결2017. 8. 9.

판결 선고2017. 10. 18.

주 문

1. 피고(반소원고)는 원고(반소피고)에게 3,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. 9. 28.부터 2017. 10. 18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(반소피고)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(반소원고)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.
3.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 중 50%는 원고(반소피고)가, 나머지는 피고(반소원고)가 각 부담하고,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(반소원고)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1. 본소

피고(반소원고,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)에게 6,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. 9. 29.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

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반소

원고는 피고에게 2,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. 10. 8.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다툼 없는 사실

가. 원고는 A와 B K3 승용차(이하 '원고 차량'이라고 한다)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, 피고는 C와 D 스포티지 승용차(이하 '피고 차량'이라고 한다)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각 체결한 보험자이다.

나. 원고 차량은 2016. 6. 29. 02:05경 별지 사고현장약도 기재와 같이 전방 교통신호가 적색점멸임에도 광주 광산구 하남동 장수지하차도 앞 사거리 교차로를 흑석사거리 쪽에서 장수지하차도 쪽으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직진하였다(원고 차량이 #2로 표시되어 있다).
다. 피고 차량은 위 일시에 위 사고현장약도 기재와 같이 위 교차로를 하남파출소 쪽에서 하남역 쪽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교통신호가 황색점멸임에도 위 교차로 좌측 방향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원고 차량을 살피지 아니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3km나 초과한 상태에서 곧바로 직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다(피고 차량은 #1로 표시되어 있다).

라. 위와 같은 원고 차량 운전자 A와 피고 차량 운전자 C의 과실로 위 일시에 피고 차량의 앞 범퍼로 원고 차량 조수석 쪽 측면을 들이 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, 이로 인해 원고 차량 동승자 E가 사망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사고'라고 한다).

마. 원고는 2016. 9. 27. 피보험자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E의 보험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고, 피고는 원고의 구상금 지급 요청에 따라 그 중 1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.

2. 주장 및 판단

가. 당사자의 주장

1) 본소 청구의 요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피고 차량의 속도위반이 주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80%로 평가하여야 한다. 따라서 피고는 그 책임비율에 따른 금액인 1억 6,000만 원(= 2억 원×80%) 중 아직 미지급한 6,000만 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른 원고의 구상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.

2) 반소 청구의 요지 원고 차량 운전자가 일시 정지한 후에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의 주된 원인이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40%로 평가되어야 한다.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책임비율에 따른 금액인 8,000만 원(= 2억 원×40%)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2,000만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1) 아래 각 사실 내지 사정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 제1 내지 9, 을 제1, 2,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,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관한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비율을 원고측 35% : 피고측 65%로 산정함이 상당하다.

○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는 다른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(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).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교차로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 차량이 위 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이미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진행하고 있었다. 그렇다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원고 차량에 그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.

○ 황색점멸신호에서는 교통상황에 주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하고, 적색점멸신호에서는 일시정지한 후 교통상황에 주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하는 등 주의의무의 차이가 있기는 하다. 그러나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시킨 경우라면, 설령 선진입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적색점멸신호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이 황색점멸신호에서 교통상황을 전혀 살피지 않고 후에 진입한 운전자 보다 크다고 할 수는 없다(피고 차량 운전자가 원고 차량이 일시 정지 할

것이라고 신뢰하고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보아야 할 사정도 찾기 어렵다).

○ 피고 차량 운전자가 심야에 과속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려 시도하지 않았거나 조금만 주위를 살피면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면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여 통과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. 결국 좌우를 살피지 않고 과속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무모한 운전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주된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. 원고 차량이 좌회전 차선에서 진행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그 결론이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.

2) 그렇다면 피고는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2억 원 중 책임비율에 따른 1억 3,000만 원(= 2억 원×65%)에 대하여는 원고의 구상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위 3,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의 다음날인 2016. 9. 28.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. 10. 18.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에 정한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기각하며,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판사양환승

별지